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제도 안내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위탁받은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사무 및 그 밖에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신고 포상금 제도의 세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분야 및 포상금액**

신고 분야			위반사항	포상금액
품질 분야	가짜석유제품 제조		석유사업법 제29조	1,000만원 ~ 200만원
	가짜석유제품 판매	영업시설 설치 및 개조	석유사업법 제29조	200만원
		그 밖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29조	100만원
		비석유사업자 (무등록자)	석유사업법 제29조	10만원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석유사업자)		석유사업법 제27조·제31조	20만원
유통 분야	정량미달판매		석유사업법 제39조	20만원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 보관·공급		석유사업법 제39조	20만원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		석유사업법 제39조	20만원
	용제 등을 보일러 연료로 판매		석유사업법 제39조	20만원

◈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8호(2016.12.27.)「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내부 규정)

☐ **신고방법** : 전화(1588-5166),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www.kpetro.or.kr),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본부명	관할구역	신고전화
수도권남부본부	인천광역시, 경기남부 일원 (수원,성남,과천,광주,의왕,안양,광명,부천,시흥,안산,군포, 하남,화성,오산,평택,안성,용인,이천,여주,양평,김포)	031)702-0200
수도권북부본부	서울특별시, 경기남부를 제외한 지역	031)843-0200
강원본부	강원도	033)345-0200
충북본부	충청북도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044)864-0200
전북본부	전라북도	063)277-0200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054)475-0200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055)363-0200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52-0200

◈ 소비자 신고(정품, 정량) 대표전화 : 오일콜센터(1588-5166)